

# 신주쿠구 물가급등대책 임시급부금(7만 엔) 안내 및 기재예

고물가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주쿠구 물가급등대책 임시급부금' (7만 엔)을 지급합니다.

2023년도 주민세 과세 상황에 기초해 급부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분에게 신주쿠구에서 '확인서'를 발송합니다. 급부금 수급을 원하는 분은 아래 '수급 절차' 및 동봉한 '기재예'를 확인한 후 '확인서'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

## 지급 대상

2023년 12월 1일(기준일)에 신주쿠구의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된 세대 전원이 2023년도 주민세 균등할이 과세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2023년도의 주민세 균등할이 과세되지 않은 분의 부양 친족 등으로만 구성된 세대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자치체에서 2023년도 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을 대상으로 한 급부금(7만 엔)을 수급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 수급 절차

- ① '확인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 ② '확인서'의 '첨부란'에 금융기관명, 지정명 또는 지점 번호, 계좌 번호, 계좌 명의(가타카나)를 확인할 수 있는 이체 계좌 통장 또는 현금카드 사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 ③ '확인서' (절취선에 맞춰 절취한 것)를 동봉한 회신용 봉투에 넣어 반송해 주십시오.

【 주 】신주쿠구가 가장 최근의 세금 정보 등을 확인하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반송 기한

2024년 4월 30일(화)

※당일 소인 유효

○수급을 원하는 분은 반드시 기한 내에 반송해 주십시오.

○기한이 지나면 수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확인·동의 사항>

- ① 세대 전원의 2022년분 소득(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의 합계)이 2023년도 주민세 균등할이 과세되는 액수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 ② 2023년도 주민세 균등할이 과세된 자의 부양 친족 등으로 구성된 세대가 아닙니다.  
※주민세 취급으로서 부양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친족(부모, 자녀 등)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③ 2023년도 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을 대상으로 한 급부금(7만 엔)을 다른 자치체로부터 수급하지 않았습니다.
- ④ 수정 신고 등에 의해 2023년도 주민세 균등할이 과세되는 등, 지급 대상외가 된 경우에는 수급한 급부금을 반환합니다.
- ⑤ 신주쿠구가 정한 기한까지 '확인서' 불비에 대한 보정 요청에 답변이 없는 경우(불비가 보정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 취소로 간주하는 데 동의합니다.  
※세대주 이외의 명의로 된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는 뒷면의 '대리로 수급하는 경우'를 기재해야 합니다.

## 예

**앞면**

① 기입해 주십시오  
인쇄된 세대주 성명을 확인한 후 확인 동의일 및 항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서명(자필)해 주십시오. 급부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는 기재가 필요합니다.

② 이체 계좌를 기입해 주십시오  
여기에 금융기관명, 지정명 또는 지점 번호, 계좌 번호, 계좌 명의(가타카나)를 기입해 주십시오. 유초은행과 그외의 금융기관은 기입란이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뒷면**

③ 대리로 수급하는 경우(이체 계좌의 명의를 세대주와 다른 경우는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세대주와의 관계'란이 '②'기타'인 경우는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의 본인확인서류(※아래 참조) 사본을 동봉해 주십시오

④ 계좌 확인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금융기관명, 지정명 또는 지점 번호, 계좌 번호, 계좌 명의(가타카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 통장 또는 현금카드 사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 신주쿠구 물가급등대책 임시급부금 문의처

신주쿠구 물가급등대책 임시급부금 콜 센터  
**0120-008-115** (무료)  
 [접수 시간]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15분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주쿠구 홈페이지  
<https://www.city.shinjuku.lg.jp/>

